

용역계약서(안)

계약자	발주자 (갑)	명지대학교
	계약상대자 (을)	* 사업자등록번호 : * 상 호 : * 주 소 : * 대표자 :
계약내용	계약건명	명지대학교 오라클 DB 서버 유지보수 용역 계약
	계약금액	일금 원(W , 부가세 포함)
	계약보증금	계약금액의 10%(W) 이상에 해당하는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 제출
	계약기간	2021.04.01.(목) ~ 2022.03.31.(목), 12개월
	대금지급	매월 유지보수 용역완료 및 이행보고서 제출에 이상이 없을 경우 당월 대금 (W)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 다만, 계약세부조건 제4조에 의거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
	기타사항	인지세법 제3조에 따른 갑의 인지세(만원)는 을이 부담한다.

1. 갑과 을은 붙임의 계약문서를 포함하여 위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다할 것을 약속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써 용역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 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계약법(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 포함)과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붙임 1. 계약세부조건 1부
2. 유지보수 수행계획서 1부
3. 견적서 및 오라클 기술지원확약서 각 1부. 끝.

2021 년 4 월 1 일

[갑] 법인명 : 명지대학교

[을] 상 호 :

주 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116

주소 :

대표자 : 유 병 진 (인)

대표자 : (인)

계약세부조건

제1조(목적) 본 계약세부조건은 갑의 오라클 DB 서버(이하 '서버'라 함)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 관리하기 위한 을의 업무범위, 의무 및 책임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유지보수 대상 및 내역) 유지보수 대상 및 내역은 아래와 같다.

구 분	유지보수 대상 및 내역
유지보수 대상	▶ 오라클 DB 서버 1식에 대한 Oracle Premier Support 1. 모델명 : ODA(Oracle Database Appliance) X7-2 HA 2. 세부품목 및 사양 1) 72Cores, 768GB, 3.2TB&16TB All Flash 2) Oracle Server X7-2 server nodes x 2 - Intel Xeon Gold 6140 18core 2.3GHz 2 processors - 384GB Memory - 480GB SSDs(mirrored) for OS(1node) - Dual port External 12Gb/s SAS-3 HBA - Dual port 10/25 GbE SFP28 PCIe interconnector adapter 3) One DE3-24C Storage Shelf - 800GB 3.5inch SAS SSD(database redo logs) - 3.2TB 3.5inch SAS SSD 4) Oracle Linux and Appliance Manger(pre-installed)
H/W 및 S/W 부문	▶ H/W ILOM 점검 등 ODA X7-2 HA 서버의 H/W 일체 ▶ Oracle Linux 6.1 기술지원
업무지원	1. 월 1회, 정기 방문점검, Part 장애 처리 지원, 긴급상황 비정기 방문점검 2. 전담엔지니어 배정 3. 을의 법정 근로시간 내 메일, 전화, 원격 지원 등을 통한 기술지원 (Telnet, Web을 통한 Multi Service 지원) 4. 문제해결을 위한 기술 상담 및 컨설팅 5. 제조사인 오라클의 기술지원

제3조(제3자 소유의 권리 사용 및 면책) ①을이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제3자 소유의 소프트웨어 저작권, 특허권이나 의정권, 기타 지적재산권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 그 사용을 위한 정당한 권리를 취득하여야 한다.

②갑이 본 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지적재산권에 관한 소송을 당하거나 기타 법적 절차의 상대방이 된 경우 을은 그로부터 갑을 방어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갑의 변호사 비용과 법적절차 방어를 위한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4조(유지보수로 지급제한) 갑은 을이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유지보수로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

1. 갑과 협의없이 유지보수 업무가 정상적으로 수행되지 않을 경우 유지보수로 지급을 연기한다.
2. 서버의 장애시 을이 12시간 이내 정상적으로 복구하지 못할 경우, 갑은 매 지체시간당 계약 금액의 1000분의 1.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월 유지보수료에서 공제하여 지급한다. 단, 을의 책임없는 사유로 지체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5조(최적화 조치) 본 계약의 범위 내에서 유지보수 서비스의 최적화를 위한 갑의 요구에 을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유지보수 점검방법 및 시간) ①을은 월 1회 서버에 대한 정기 방문점검을 행하고 필요한 후속 업무를 시행한다.

②유지보수 서비스는 공휴일을 제외한 을의 법정 근로시간으로 한다.

제7조(계약의 양도 등) 갑과 을은 상대방의 승낙없이 본 계약의 권리,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대여, 담보제공할 수 없다.

제8조(손해배상) ①계약기간 중 을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갑 또는 제3자의 손해에 대하여 을은 원상복구할 의무와 그 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손해배상의 책임에서 면책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인 경우
2. 갑이나 제3자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인 경우

②제1항의 손해에 대하여 을은 을의 과실이 없음에 대한 입증책임을 진다.

제9조(보고서 제출) ①을은 매월 예방정비 및 장애보수 완료 후 갑에서 유지보수 이행보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을은 서버 운영(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포함) 개선을 위한 갑의 추가 보고서 제출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운영자 교육지원) 서버의 효율적인 유지보수와 운영을 위해 갑의 요청 시 을은 자신의 비용과 부담으로 갑의 운영자 교육을 실시하며, 교육인원 및 일정은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11조(보안관리) 을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갑의 모든 정보를 갑과 협의없이 외부에 유출시
이와 관련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제12조(계약의 중도해지) 을이 본 계약을 위반하거나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 갑은 을에게 서면통보(팩스나 전자메일 포함)로써 계약이 전부 내지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갑은 을에 대하여 일체의 배상책임을 지지 않고 계약보증금은 갑에게 귀속된다.

1. 을이 갑의 과업지시에 이유없이 응하지 아니하여 갑에 의해 2회 이상 경고를 받은 경우
2. 을의 고의·과실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경우
3. 부득이한 사유로 을이 본 계약을 이행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4. 주요재산의 양도, 압류, 가압류나 회사정리, 파산, 회익절차의 신청 등 신용에 위험이 있는 경우

제13조(하도급 금지) 을은 갑의 동의없이 본 계약과 관련하여 제3의 업체에게 하도급을 줄 수 없다.

제14조(자동연장 및 재계약) ①갑이나 을에 의해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서면(전자메일,
팩스 포함)에 의한 계약변경이나 해지 의사가 없는 경우 본 계약은 동일한 계약조건의 1년
단위로 자동연장된다.

②제1항에 의해 본 계약이 자동연장시 을은 자동연장 기간에 해당하는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계약기간 동안 계약 이행의 성실도를 평가하여 갑으로부터 우수 판정을 받았을 경우 1년
단위로 재계약 할 수 있다.

제15조(인수인계) 본 계약건에 대한 신규 새로운 사업자가 선정되는 경우 을은 후임 사업자에게
업무인계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6조(기타사항) ①을은 본 계약에 기재되지 않은 조건이라 할지라도 필수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당연 용역업무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②갑과 을은 상호 합의에 따라 필요할 경우 서면으로 본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③계약서상의 문구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 갑과 을이 상호 합의하여 결정하고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갑의 해석에 따른다.

④본 계약과 관련된 모든 분쟁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배타적 전속적 1심 재판 관할권을 가진다.